

일족즉발

—	등록번호	20214456	홈페이지 이메일 bareuncompany7@gmail.com
	최초등록일	2021.11.08	
	최종등록일	2024.11.21.	

일족즉발

정보공개서

“주식회사 청담시스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7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 조 제 1 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주식회사 청담시스템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번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 주된 사무소:경기도 하남시 감일로102번길 3,301호(감일동)]

[가맹본부 대표번호]

[가맹본부 대표팩스번호]

[가맹사업 담당부서: 경영지원팀]

일족즉발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정보
2. 특수관계인의 일반정보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여부
4. 가맹희망자가 사용하게 될 영업표지 및 가맹사업의 내용
5. 가맹본부의 재무현황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7. 가맹본부의 임직원 수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사실
9. 사용을 허가하는 지식재산권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가맹사업 시작일
2. 가맹사업 연혁
3. 가맹사업 업종
4. 바로 전 3개년도 말 가맹점 및 직영점 현황
5. 바로 전 3개년도 말 가맹점수 변동 현황
6. 기타 가맹사업 현황
7. 가맹점사업자당 연간 평균 매출액 및 그 산정기준
8. 일족즉발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현황
10. 광고·판촉지출 내역
11. 가맹금 예치기관
12. 가맹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내역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3. 형(刑)의 선고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일족즉발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2. 영업 중의 부담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1. 물품 구입 및 임차
2. 거래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내역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4. 영업지역
5.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 연장, 종료 및 수정, 해지
6.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등
7.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8. 광고 및 판촉의 조건과 비용 부담 기준
9.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사항
10.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가맹점 오픈 절차
2. 분쟁 해결 절차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3. 경영활동 자문
4. 신용 제공 등 내역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3.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
4. 교육·훈련 불참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정보공개서를 읽기전에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 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 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일족즉발

정 보 공 개 사 항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정보

당사의 회사설립 및 사업자등록에 관한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주식회사 청담시스템	“일족즉발” 외 2		경기도 하남시 감일로102번길 3,301호(감일동)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 등록일	대표자	전화번호 및 팩스
	2023.01.27	2023.02.01	이성근	-
	법인등록번호	135711-0209918	사업자등록번호	721-88-02480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 중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 경영 경험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	영업표지	주 소		
대표이사	이성근	일족즉발 외2	경기도 하남시 감일로102번길 3,301호(감일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이성근	-	-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내이사	유소희	일족즉발 외2	경기도 하남시 감일로102번길 3,301호(감일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이성근	-	-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감사	임진우	일족즉발 외2	경기도 하남시 감일로 102번길 3,301호(감일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이성근	-	-

일족즉발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내역

●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있습니다.

인수합병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합병일	주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 일부를 인수함	주식회사 바른생각 바른컴퍼니	빼대잇는소 갈빔대	2024.07.24.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로 35, 4층 4920호(일원동, 남경빌딩)	김기욱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 일부를 인수함	주식회사 바른생각 바른컴퍼니	제 1 축산	2024.07.24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로 35, 4층 4920호(일원동, 남경빌딩)	김기욱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 일부를 인수함	주식회사 바른생각 바른컴퍼니	계화식당	2024.07.24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로 35, 4층 4920호(일원동, 남경빌딩)	김기욱

4. 가맹희망자가 사용하게 될 영업표지에 관한 사항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일족즉발	없 음
상 호	일족즉발 00 점	없 음
상표 (서비스표)	-	-
그 밖의 영업표지		

일족즉발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현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3년	58,061	131,704	-73,643	69,704	-125,734	-123,643
2022년	-	-	-	-	-	-
2021년	-	-	-	-	-	-

그 근거는 별첨 2와 같습니다.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표지	연도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매출액	상한	하한
계화식당	2023년	-	-	-
	2022년	-	-	-
	2021년	-	-	-
일족즉발	2023년	-	-	-
	2022년	-	-	-
	2021년	-	-	-
빠대잇는소 갈빗대	2023년	-	-	-
	2022년	-	-	-
	2021년	-	-	-

당사는 21년도에 가맹사업을 개시하였으며 당사의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공급하는 가맹사업 매출액과 프랜차이즈 디자인 개발 컨설팅 등으로 구성됩니다. 21년도 가맹점 평균 운영 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아 정확한 매출자료를 산정 할 수 없으나 전체매출액의 90%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일족즉발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사업체명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임원	이성근	대표이사	23.01.27~ 현재	주식회사 청담시스템	가맹사업 총괄
	유소희	사내이사	23.01.27~ 현재	주식회사 청담시스템	가맹사업 총괄
	임진우	감사	23.01.27~ 현재	주식회사 청담시스템	감사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정보공개서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 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 년 12 월 31 일	2	1	-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가맹본부	주식회사 청담시스템	유사업종의 가맹사업 경영	2024.07.24~현재	저 세상 불닭 떡볶이(등록번호:20214455) 영업표지의 가맹사업 운영
		유사업종의 가맹사업 경영	2024.07.24~현재	향촌로타리(등록번호:20212263) 영업표지의 가맹사업 운영

일족즉발

9. 사용을 허가하는 지식재산권

당사의 『일족즉발』가맹점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 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사용기간)
-	-	-	-	-	-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 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제1 축산]은 현재 상표출원 전이라 당사의 상표 등을 사용하는 권리는 관계법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일족즉발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가맹사업 시작일

『일족즉발』을 시작한 날: 아직 가맹계약 체결 사실이 없습니다.

『일족즉발』 직영점을 시작한 날: 직영점은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사업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기간	주된 사무소 소재지
주식회사 바른생각 바른컴퍼니	제 1 축산	김기욱	가맹사업 시작 예정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41길 ,E동 14층 1405호 R2호 당산 SK V1센터
주식회사 바른생각 바른컴퍼니	제 1 축산	김기욱	가맹사업 시작 예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로 35, 4층 4920호(일원동, 남경빌딩)서
주식회사 청담시스템	제 1 축산	이성근	가맹사업 시작 예정	경기도 하남시 감일로102번길 3, 301호
주식회사 청담시스템	일족즉발	이성근	가맹사업 시작 예정	경기도 하남시 감일로102번길 3, 301호

3. 가맹사업 업종

『일족즉발』에 대한 가맹사업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표지	업종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일족즉발	한식	즉발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일족즉발』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당사는 직전연도 가맹점 및 직영점 운영 매장은 없습니다.

일족즉발

5. 바로 전 3년간 『일족즉발』 가맹점수

당사는 직전연도 가맹점 및 직영점 운영 매장은 없습니다.

6. 『일족즉발』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2021.12.31	2022.12.31	2023.12.31
가맹본부	주식회사 청담시스템	저 세상 불닭 떡볶이	20214455	분식	0/0	0/0	0/0
		향촌로타리	20212263	주점	3/0	0/0	0/0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당사는 직전연도 가맹점 및 직영점 운영 매장은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바로 전 사업연도 말의 가맹점사업자당 연간 평균 매출액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8. [일족즉발]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당사의 『일족즉발』 브랜드는 바로 전 사업연도에는 가맹점이 없습니다.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현황

당사는 가맹지역본부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단위:천원,부가세미포함)

일족즉발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
합계	광고선전비	-	-
광고	손익계산서상 광고선전비	-	-
판촉	-	-	-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민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주소	전화번호
우리은행	우리은행 본점	서울시 중구 소공로 51(회현동 1 가, 우리은행 본점)	1588-5000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국민은행에 계약체결 다음날까지 예치신청 하셔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국민은행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가맹금 예치제도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주식회사 청담시스템를 찾아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귀하는 또한 국민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 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2 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일족즉발

당사는 가맹금 예치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피해보상 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보상보험제도와 관련하여 당사의 운영방침이 변경된 경우 정보공개서를 통해 이를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일족즉발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일족즉발)』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비용을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협력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가맹비	₩8,800	계약 체결일	영업 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	가맹점 모집을 위하여 소요되는 소 멸성비용	반환시 당사에서 정한 위약금을 공제
교육비	₩3,300	계약 체결일	교육 개시 이전 계약 해지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기준인원 2명 1명초과시 110만원씩추가.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계약이행 보증금	₩3,000	계약 체결일	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 급한 물품 파손 및 물품 대금 미지급 등	직전년도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1회 평균 상품 등의 대금(원· 부재료 대금 포함)의

일족즉발

				3 배 이내
--	--	--	--	--------

보증금은 귀하가 당사와의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담보기간동안 이자가 발생하지 않으며 보증금의 반환시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잔존채무와 손해배상액을 정산 후 반환됩니다.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해야 하는 가맹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부가세 포함)

구분	예치가맹금액
합계	₩ 15,100,000원
가맹비	₩ 8,800,000원
교육비	₩ 3,300,000원
이행보증금	₩ 3,000,000원 (부가세 없음)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 및 금전 지급방법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만, 기존 가맹점 양수인의 경우에는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15)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간판, 인테리어 등 기타 비용 (기준: 66㎡, 20평 단위:천원, VAT포함)					
구분	지급 대상	총 금 액	3.3 ㎡당 금 액	지급 기한	반환 조건
[총 계]		[69,520]	[3,476]	-	-
간판	협력업체	7,700	-	시공업체와	시공업체와

일족즉발

				협의결정	협의결정
사인물	협력업체	2,200	-	시공업체와 협의결정	시공업체와 협의결정
인테리어 (실내)	협력업체	33,000	[1,650]	시공업체와 협의결정	시공업체와 협의결정
주방설비	협력업체	9,900	[495]	공급업체와 협의결정	공급업체와 협의결정
주방집기	협력업체	6,600	[330]	공급업체와 협의결정	공급업체와 협의결정
초도물품	가맹본부	3,300	-	계약시 협의결정	물품발주전 계약해지시
테이블세트 (로스타포함)	협력업체	5,500		공급업체와 협의결정	공급업체와 협의결정
의자	협력업체	1,320		공급업체와 협의결정	공급업체와 협의결정
가맹점사업자 직접시공 및 설비구입시 검수비: 평당 22 만원 (VAT포함)					

- 위 표의 금액은 매장규모 및 물가인상, 디자인의 변동 등 사정에 따라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간판은 매장규모에 따라 그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인테리어의 비용은 매장면적에 따라 66 ㎡(20 평)이하의 기본 3,300 만원 (부가세 포함)의 비용이 소모되며 이후 3.3 ㎡당 165 만원(부가세포함)의 추가 비용이 소요됩니다. 다만, 물가변동에 따라 그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방설비와 주방집기는 면적과 상관없이 최소기본설비가 필요하므로 상기 기재된 평당 단가와와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주방설비는 기준 66 ㎡(20 평) 이후 추가 3.3 ㎡당 33 만원(부가세포함)
주방집기는 기준 66 ㎡(20 평) 이후 추가 3.3 ㎡당 44 만원(부가세포함)
이 소요됩니다.
- 귀하는 인테리어, 간판, 주방 등의 설비는 가맹사업의 동일성과 독창성 유지 및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당사(협력업체포함)에 의뢰하여 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귀하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의 승인 하에 귀하가 직접 시공할 수 있으나, 귀하는 당사가 파견하는 직원의 감리(관리감독)를 받아야 하며, 이의 비용으로 당사에 22 만원(부가세포함)의 검수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각종 인허가, 인터넷 및 전화개설, 기존 시설물 철거 및 정화조공사, 전면유리 및 샤시공사, 어닝, 소방공사, 상하수도공사, 냉난방공사, 가스공사, 전기승압공사,

일족즉발

외부닥트공사, 화장실, 의탁자, 오디오,테이블 호출벨,구조검토보고서
(입점지의요청시) 등은 별도로 실비를 추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 초도물품과 관련하여 초도 발주물량에 따라 그 비용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업종변경의 경우, 별도 협의가 가능합니다

5) 가맹계약 체결 및 당사 금전 지급 후 해약 시 위약금

귀하가 당사에 금전을 지급하거나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 한 후(둘 중 빠른 시점) 일방적인 변심 등 귀하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가맹점 개점 전 해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귀하가 당사에 지급한 금액 중 반환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의 위약금 규정에 따라 상계처리 후 반환 됩니다.

해약 요청 일자	위약금
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 시간 이내	100 만원
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 시간 이후 10 일 이내	200 만원
계약 체결 후 10 일 이후 가맹점 오픈 이전	300 만원
개점 관련 발생하는 인테리어, 설비공사비용 등	실제 발생비용 전액

6)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입지 선정의 기준
가맹점사업자	1)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점포의 입지를 선정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입지선정에 당사는 해당 지역의 행정구역상의 구분, 시장의 특성, 주요한 근린시설, 업종특성에 따른 매출성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점포의 실사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가 조언한 경우라도 최종 의사결정권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있습니다.

7)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닐것,

일족즉발

	없을 것	만 19 세 이상일 것 위생교육 수료자, 보건증 소지자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 18 세 이상일 것 보건증 소지자일 것

- 귀하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가맹점운영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적발될 경우, 관할 관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일족즉발』 가맹점 운영을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9) 귀하가 당사에 가맹금을 한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체결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 대상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로열티	가맹본부	330	매월 5 일	해당없음	소멸성 비용	전월에 대한 대가

일족즉발

영업표지 간판변경비	협력업체	교체보수 필요시 협의	시공업체와 협의	시공업체와 협의	시공업체와 협의	부득이한 경우 변경
점포환경 개선	협력업체	가맹본부분담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VII.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중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참조			
개점이후 교 육비	가맹본부	기본교육 무료, 특수사항 실비	교육실시 7 일전까지	교육실시 3 일전 취소	교육후 반환되지 않음	수시교육
		개별교육에 따라 가맹점주와 협의 산정	교육실시 7 일전까지	교육 실시 1 일전 취소	교육후 반환되지 않 음	특별교육
광고, 판촉 분담금	가맹본부	자세한 내용은 (V-8-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실시후 반환불가	-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 15%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	금전지급 의무의 지급기한 경과시 부담.
POS 월사용료	협력업체	[월 33~55]	지정업체와 협의	해당사항 없음	사용 대가 지급	사용량에 따라 변동

- 리스료, 재고관리비용, 회계처리비용, 영업지역 보증금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광고판촉분담비에 관하여는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중 9. 광고 및 판촉의 조건과 비용 분담 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점포환경개선과 관련한 가맹본부의 분담비율에 관하여는 “VII.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중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당사는 2021 년도에 가맹사업을 시작하였으나 가맹점이 없어 필수품목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의 2023 년도 자료는 없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족즉발

감독 항목	내 용	시 기	비 고
재고관리 등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운영 상태 및 취급품목, 실제재고수량조사, 공급품의 보관상태 등	분기별 1 회	문의 가맹본부 운영팀 02-865-2227
회계처리	영업장부 및 회계자료의 작성유지 여부, 연매출액에 대한 자료요청 및 매출누락에 대한 회계조사 실시	분기별 1 회 및 요청시	문의 가맹본부 운영팀 02-865-2227

- 당사는 가맹계약서 제 30 조(방문점검)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의 점포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분기별 1 회 당사의 직원을 통하여 당사가 정한 규정 이외의 품목 취급 여부, 공급품의 보관상태 등 매장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 및 지도, 관리, 감독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장의 점검 및 확인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의 직원이 점포에 출입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가맹점 영업과 관련하여 영업 장부와 회계자료를 성실히 작성·유지하여야 하며, 당사가 가맹사업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전략의 수립과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당사가 정보공개서 작성을 위해 귀하의 연 매출액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제공하여야 합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갑”의 경영방침이 변경되어 “갑”이 갱신비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맹계약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을”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을”이 동의하면 갱신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하는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일족즉발

당사가 가맹점운동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 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 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가맹점사업자가 잔여 계약기간에 대한 가맹점운영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비와 이행보증금**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완전한 계약기간의 신규가맹계약 체결을 원할 경우에는 **가맹비와 교육비, 이행보증금**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양수인이 가맹본부가 주관하는 개점홍보를 희망하는 경우, 개점홍보비를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와 『일족즉발』 가맹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당사로부터 부여 받았던 가맹점운영권이 만료되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① 당사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은 『일족즉발』 가맹사업과 관련된 영업표지 등의 사용을 지체없이 중단하여야 하며, 사용허가를 얻어 사용하던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을 계약해지 및 종료 후 10일 이내 철거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맹점운영에 관한 관계서류와 지원품목 등을 반환 또는 폐기하여야 합니다. 이때 철거 비용은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가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종료되는 경우 외에는 귀하께서 부담하여야 합니다.
- ② 전항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일정한 금액의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의 정산잔액과 정산서를 받을 때까지는 상호·간판 등의 철거 내지 제거, 영업관리 자산의 반환의무 이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 ③ 가맹점사업자가 당사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의 공급물품의 특성상 유통기간 및 부패, 오·훼손 등의 문제로 인하여 반품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최근 2개월 이내에 공급된 상품으로서 재판매가 가능한 완전물에 한하여 당사에 반품요구를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

일족즉발

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일족즉발』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나) 주요 품목 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순번	품목(단위)	공급가격		구분
		상한	하한	
해당 없음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일족즉발』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수취하는 경제적 이익은 없습니다.

2. 거래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내역

일족즉발

- 1) 당사는 『일족즉발』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 2) 당사가 『일족즉발』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가맹본부 제공상품 일체 - 하단 3) “상품품목 및 권장가격” 참조	왼쪽에 기재된 이 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1 회 위반: 구두 경고 2 회 위반: 서면시정요구 후 가맹점운영권제한 3 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당사로부터 승인을 받 은 경우에는 제외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 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귀하가 승인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를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거래상대방(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일족즉발” 의 타 가맹점	당사로부터 공급받는 모	거래상대방별로 왼쪽에 기재된	1 회 위반: 구두경고	당사로부터 승인을 받은

일족즉발

당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	든 물품	제품은 판매할 수 없음	2 회 위반: 서면 시정 요구 후 가맹점운영권 제한	경우에는 제외
			3 회 위반: 계약해지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시장상황이나 소비자의 동향 또는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소비자 판매가를 정하여 권장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 (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족발 한상	33,000	서면이나 전자우편 또는 팩스통지, 홈페이지 공지 등	(계절 및 지역적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족발 한상 + 막국수	41,000		
보쌈 한상	33,000		
보쌈 한상 + 막국수	41,000		

-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권장 가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고 당사와 서면으로 사전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4 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으며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일족즉발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족발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음식업,가맹사업	일족즉발	해당 없음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상권에 따라 상이하나 영업거점 주소지로부터 반경 500M의 면적을 포함하는 도로 및 건물기준의 다각형을 원칙으로 함	별지에 영업지역을 다각형 선으로 구체적으로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영업지역내 대형할인매장, 백화점, 대형마트, 지하상가, 공항, 호텔, 종합병원
등은 특수상권으로서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본다.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
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 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 팀 검토 → 영업지역 조정 통보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통지 → 가맹점사업자와의 합의→ 영 업지역 변경 완료(신규 점포 입 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일족즉발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데 대하여 별다른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①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 ②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 ③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일족즉발』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일족즉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0%	0%	0%	0%

당사는 온라인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일족즉발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0%	0%

당사는 온라인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일족즉발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 및 수정, 해지

1) 가맹계약의 기간

『일족즉발』의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갱신시에는 1년씩 연장됩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3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4 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 년간** 주어집니다. 다만 당사에게 정당한 사유(갱신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 재계약 또는 계약 연장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 (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 +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 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일족즉발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 (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가맹점사업자가 다음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조건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38조 제1항 각호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가. 당사는 아래와 같은 계약 해지 사유 발생 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 후 이에 대한 가맹점사업자의 시정이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계약의 일반적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가 1개월에 걸쳐 2회 이상 원·부재료 등에 관한 대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제39조 제1항
○ 가맹점사업자가 2회 이상 정기납입경비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일족즉발

○ 가맹점사업자가 정기납입경비의 산정을 위한 총매출액 또는 매출액 증가비율을 3회 이상 허위로 통지하는 경우	
○ 가맹본부의 품질관리기준을 6개월에 걸쳐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협의 없이 점포 운영을 3일 이상 방치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약정한 광고·판매촉진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본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지적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 가맹본부의 승인을 얻지않고 영업을 양도, 임대하거나 영업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 기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영업방침등 거부를 선동하거나 협박하는 등 부도덕한 행위 또는 불법행위 등이 입증되어 가맹본부나 다른 가맹점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으로서 당해 가맹점사업자와의 정상적인 사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당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지절차 없이 즉시해지를 할수 있습니다.

계약의 즉시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39조 제2항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일족즉발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다. 가맹점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즉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당사에게 파산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39조 제4항 각호
당사가 발행한 어음, 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당사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라. 가맹점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서면으로 계약의 위반사실을 명시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당사가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문서를 당사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하며, 당사가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당사가 가맹점운영에 필요한 공급품에 대하여 부당하게 공급을 거절하는 경우	제39조 제3항

마. 그밖에 가맹점사업자가 위에 해당하는 해지사유 이외에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최소 2개월 전에 해지 의사 표시를 서면으로 요청 후,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32조 제5항)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와 귀하의 서면합의를 거쳐 계약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일족즉발

재조정 절차	동의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 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 동의를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등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정보공개서 제공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체결 (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070-8822-5529

● **양수인**은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하며, 당사에게 **교육비와 이행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신규가맹계약 체결**을 원할 경우에는 **가맹비와 교육비, 이행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양수인이 가맹본부가 주관하는 개점홍보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개점홍보비를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으면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가능 여부 (조건)	이전 범위	절차	비고
----	------------	-------	----	----

일족즉발

상속	상속인 서면 통지시 가능	모든 권리 의무	서면통지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대리행사	본부 승인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내의 권리의무	서면통지 및 승인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업무위탁	불가능	-	-	가맹본부외 제3자의 위탁경영 불가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 기간중에 자기 또는 제 3 자의 명의로 당사의 허락 없이 『일족즉발』 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다음과 같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업제한기간	경업금지되는 업종	경업제한지역	경업허가절차
계약의 존속 (계약해지의 경우 잔여기간포함) 또는 계약기간 종료후 2 년	『일족즉발』 과 동일한 컨셉이나 노하우를 사용하는 즉발 전문점	국내 전 지역	해당사항 없음 (문의:1577-3715)

- 당사는 귀하가 가맹계약 종료 후 당사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 3 자의 명의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일족즉발』 의 영업비밀이 침해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일족즉발』 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0:00~ 22:00 (12시간)	월 25일 이상	문의: 1577-3715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5 조 제 9 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 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일족즉발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형태의 제한에 있어서 가맹점 및 지역 특성에 따라 그 운영방식이 상이하기 때문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3 명 이상 [99 ㎡ 기준]	직접 근무 권장	제한없음	가맹점사업자가 매장에 근무하도록 권장하지만 필수적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음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가맹계약서 제 20 조에 따라 귀사의 영업장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분기별 1 회 점포를 점검할 수 있으며, 점포의 점검은 청결, 위생, 회계처리, 각종설비관리, 원·부재료관리, 매뉴얼 준수 여부, 기타 계약사항 준수여부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9. 광고 및 판촉의 조건과 비용 분담 기준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일족즉발』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성격	부 담 비 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전체 행사	상품광고	광고비의 50%	가맹점사업자측 50%(1/N)	행사 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 의 행사 참여 결 정 → 광고비 납 부	1. 대중매체광 고등 광고에 따 라 필요시 분담 절차는 변동될 수 있음. 2. 가맹점 30% 이상 반대시 미시행
	상품광고 + 가맹점 모 집광고	광고비의 75%	가맹점사업자측 25%(1/N)		
	가맹점 모집광고	광고비의 100%	없음		

일족즉발

판촉 행사	전체행사	행사에 따라 차등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측간 균등분담 원칙)	상기와 동일	가맹점사업자 30%이상 반대시 미시행
	개별행사	가맹점 100%부담	해당없음	가맹점단독 판촉행사

- 지역광고일 경우에는 해당지역 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분담합니다.
- 가맹점사업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영업지역 내 개별 광고 및 판촉행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절차는 없으나 본사의 승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그 집행 내역을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며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기의 비용으로 자기의 영업지역 내에서 당사와 별개로 광고·판촉활동을 실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판촉활동 등을 위한 팜플렛, 카다로그, 쿠폰 등의 내용은 브랜드의 통일성 및 이미지 유지를 위하여 **당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 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 및 손해배상에 관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 위반이나, 귀책사유 없는 일방적인 중도해

일족즉발

- 지 또는 영업중단 등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입은자는 상대방에게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으며 그 책임있는 상대방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② 가맹점사업자가 본 가맹계약의 제17조(비밀유지 의무) 또는 제18조(경업금지 의무)를 위반으로 당사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당사는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위약금 500만원 (₩20,000,000원)**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③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의 제23조(자점매입)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 필수적이며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강제)품목을 자점매입(사입)하는 경우, 당사는 “자점매입(사입)한 금액의 10배 또는 금 일천만원중 적은금액을 를 위약금으로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④ 가맹점사업자가 계약해지 및 종료시 제3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그 의무불이행의 기간에 대하여 **1일당 10만원의 지체배상금**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의 정산잔액과 정산서를 받을 때까지는 상호·간판 등의 철거 내지 제거, 영업관리 자산의 반환의무 이행을 연기할 수 있다.
- ⑤ 가맹점사업자가 제 3자에 대해 책임져야 할 손해배상을 당사가 지불한 경우에는,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⑥ 본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당사와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상의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를 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안에 국한되며, 다른 사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다.
- ⑦ 가맹점사업자는 당사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VI.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가맹점 오픈 절차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47 일 정도**가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	47 일 내외	IV.가맹점사업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1577-3715) - 홈페이지 및 직접방문	D-47	자의 부담중 1.

일족즉발

사업설명·상 담	- 전화 상담 및 본사방문 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D-46~45	영업개시 이전 의 부담 1) ~4)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점포 개발 및 상권분석 실 시	- 점포입지 선정 - 점포개발 착수 - 상권분석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34~31	
가맹계약 체 결 및 가맹금예치	- 가맹 계약 체결 - 가맹금 예치	D-30~29	
점포실측/설 계	- 매장 내.외부 중심선 기준 실측 / 평수 계산(소수점 첫째자리)	D-27~25	
도면 작성 및 인테리어공 사	- 인테리어협의 / 별도 / 추가공사 - 인테리어 공사, 설비공사 실시	D-24~2	
교육	- 교육(개점전 교육)	D-5~2	
소품 및 초도물품	- 기자재 및 소품 설치 - 초도물품공급	D-1~2	
오픈	- 영업 시작	D-day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되며 자세한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과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주소지나 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합니다. 다만, 상호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일족즉발

다.

VII.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2 및 시행령 제 13 조의 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세부내역
점포환경 개선 사유	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단, 노후화에 대한 객관적인 인정 시점은 최근 개선일로부터 최소 5년 으로 한다.) ②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 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비용 항목	① 간판교체 비용 ② 인테리어 공사비용 (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 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 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가맹본부 부담비용 비율	①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②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지급절차	①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②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 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 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일족즉발

비용부담 제외사유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 (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 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비고	집기·장비 교체비용은 가맹본부에서 비용분담을 하지 않음

-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현재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이나 지원금의 제공등과 같은 별도의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정책	대상 및 내용	절차	비용 부담	비고
가맹 본부 필요시	계약이행, 표준화, 판촉, 경영상 발생문제 등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경영활성화나 경영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가맹점을 방문하거나 유선상으로 관련된 지도를 할 수 있음.	가맹본부 부담	문의: 가맹 본부
가맹점 사업자 요청시	계약이행, 표준화, 판촉, 경영상 발생문제 등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 (경영지도 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협의 후 개별계약체결 → 경영지도 후 [30]일 이내에 가맹 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함을 원칙으로 함.	가맹점 부담	

일족즉발

- 가맹점사업자의 요청에 의한 경영지도는 개별 요청사항에 따라 양 당사자의 협의 후 개별계약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자문의 여부, 내용, 구체적인 절차는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일족즉발』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해당없음”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1) 개점 전 교육 프로그램

당사는 『일족즉발』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점 전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조리교육	삼겹살 및 육류 메뉴 교육, 주방관리	실습교육	가맹계약 체결 후 1 개월 이내	필수 교육
서비스 및 운영 교육	접객방법, 마인드 교육, 위생교육, 매장운영 등	실습교육	가맹계약 체결 후 1 개월 이내	필수 교육

2) 개점 후 교육 프로그램

당사는 효율적인 『일족즉발』 가맹점 운영·관리에 필요한 제반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점 이후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교육시간	비고
수시교육	신메뉴 및 필요시 전달교육등	실습교육	1 일(3~6h)	신메뉴출시 및 필요 시
특별교육	점주의 요청에 의한 특별교육	실습 및 강의교육	1 일(3~6h)	가맹점주 요청 시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일족즉발

귀하가 『일족즉발』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 (부가세 포함)	비고
개점 전 교육	1 일~3 일 (7h~24h)	330 만원	최초 계약시 이수 (1 일 7~8 시간 교육기준)
수시 교육	1 일(2~4h)	기본이론교육무료 실비 발생시 청구	신메뉴 및 필요시등
특별 교육	1 일(2~4h)	개별교육에 따라 가맹점 사업자와 협의 산정	점주요청에 의한 교육

3.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는 가맹점사업자와 종업원(관리자 등) 1인입니다. 다만, 사정에 따라 당사와 사전협의 한 경우에는 타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와 종업원 1인 이외의 다른 직원에 대한 추가 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인원 추가에 따른 추가 비용 (추가 1인당 110만원(부가세포함))을 당사에 지불하고 교육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가맹점사업자 및 매장근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개점이 지연 될 수 있으며 개점 이후 전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에 교육 대상자가 불참할 경우 가맹점운영권 제한 사유 및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당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 담당관실(044-200-4239~4211)**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http://franchise.ftc.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즉즉발

별첨 1. 원부자료 필수/권장 품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일족즉발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 인근 가맹점사업자 현황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직영점포함) 10개의 일반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중인 가맹점이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 현황을 제공하며, 장래점포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할 것입니다.

구분	가맹점명	소재지	연락처	비고
1				
2				
3				
4				
5				
6				
7				
8				
9				
10				

일족즉발

<수령확인서 - 가맹희망자용>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현황 수령확인서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수령일시	20 년 월 일 시	수령장소		
제공 받은 사실	<u>“상기 본인은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을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u> [하단 자필 기재요망]			

상기 기재사항들은 전부 가맹희망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하여야만 유효합니다.
 정보공개서 최종등록일: 20 . .

정보공개서 주요목차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별첨: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 인근 10 개 점포 가맹점사업자 현황

상기 본인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7 조의 규정에 의거 당
 가맹사업의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을 정히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가 땡 본 부 : (인) 또는 서명

정보공개서 수령자: (인) 또는 서명

일족즉발

<수령확인서 - 가맹본부용>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현황 수령확인서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수령일시	20 년 월 일 시	수령장소	
제공 받은 사실	“상기 본인은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을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 [하단 자필 기재요망]		

상기 기재사항들은 전부 가맹희망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하여야만 유효합니다.

정보공개서 최종등록일: 20 . .

정보공개서 주요목차

-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별첨: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 인근 10 개 점포 가맹점사업자 현황

상기 본인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7 조의 규정에 의거 당 가맹사업의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을 정히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가 맹 본 부 :

(인) 또는 서명

정보공개서 수령자:

(인) 또는 서명

일즉즉발

별첨 2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